



MINI Market Report

국가	러시아
제품	딸기, 단감

주관사 :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※ SUMMARY ※

□ 국내 준비 사항

-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수출식물 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함
- 또한,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로 등록해야함

□ 현지 준비 사항

- 지난 2006년 8월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 3국이 관세동맹 설립을 결정한 이후, 러시아 GOST-R 인증 제도도 변화를 맞고 있음
 - 지난 2013년 2월 14일부터 삼국관세 공통 인증제도인 CU(Custom Union)가 도입되었음
 - 이에 따라, 오는 2015년 3월까지만 GOST 인증은 유효하며 이후부터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
 - 이미 GOST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은 2015년 3월까지 해당 인증을 활용할 수 있지만, 앞으로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CU 인증을 취득해야 함
 - CU 즉, TR-CU로 통합됨으로써 세 지역의 국가별 인증 유효성도 모두 TR-CU로 계승되어 유효성을 지님
 - 향후 러시아를 선두로 유라시안 경제 공동체 확대의 일환으로 단일성을 나타냄으로 인증분야를 대표하게 될 전망
- ※ 2014년 9월 11일 SGS(러시아 인증취득 전문 업체)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
컨택한 결과,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CoC 또는 DoC라 불리는
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을 통해 신선 딸기, 단감을 수출 할 수 있음.
비용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이고,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

I 국내 준비 사항

1. 수출식품 검역

☐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한 수출식품 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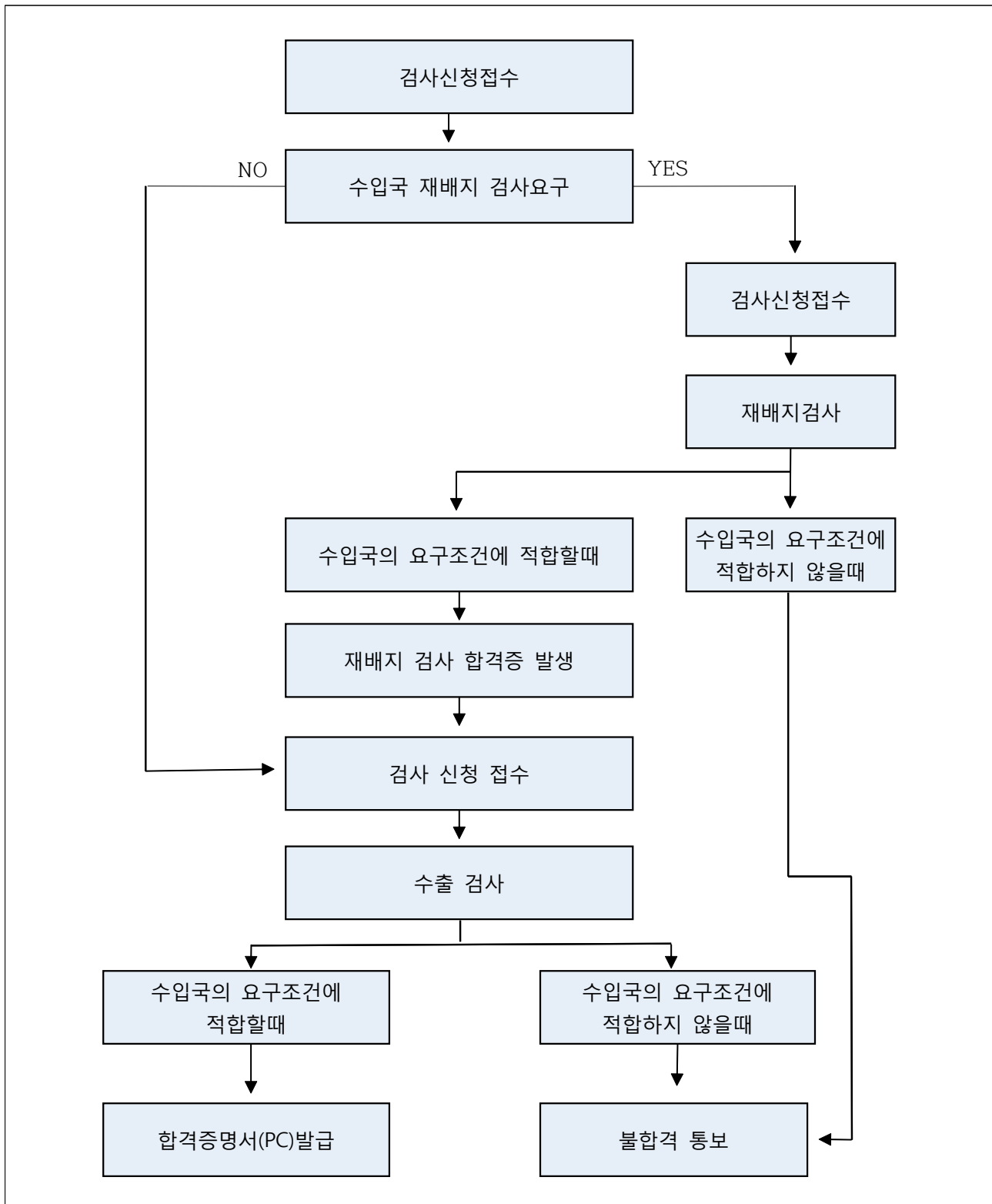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수출식품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국내법상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식품 검역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함
- 따라서 과일류 수출 시에는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를 통해 수출 대상국 수입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- 러시아의 경우 다양한 국가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고, 신선한 식품에 대한 수입 절차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 요건이 자주 변경되고 있음
- 따라서 수출 시 마다 검역본부를 통해 수출요건 변경여부 및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☐ 과실류 공통 수입 요건

- 북송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에는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

□ 수출식물 검역절차

<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식물 검역절차 >



2. 수출업체 등록

□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측에 수출업체 등록을 필해야 함

- 「對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(농림수산물부 고시 제164호, 2011.10.4)」에 따라 한국에서 러시아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출업체 등록을 마쳐야 함
- 정확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람(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,관리 지침)

<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 >

구분	내용	비고
범위	- 농림수산물부 고시 제3조에 따라 한국에서 재배·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식용 농산물	- 농산물 범위는 KATI에서 확인 가능
대상	- 위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업체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모두를 포함	-
기본 의무 사항	- 수출품의 재배지 또는 수출단계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계) - 농약 및 비료 사용내역 기록 및 관리 - 등록 시 부여된 등록번호(품목, 지역, 업체, 농가)를 활용. 생산 품목에 대한 이력 관리 - 부적합품의 수출금지. 안전증명서 첨부 등 수출 관련 준수사항	- 안전증명서는 러시아 요청 시에만 해당
등록 절차	- 對러시아 수출업체 등록 신청서. 對러시아 농산물 수출계획서, 對러시아 농산물 수출예정 신고서 등 3개 서류(이상 별도 양식 있음)를 신청 업체 관할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제출 - 신청기관(각 지사) 연락처 서울경기 지사 인천 지사 강원 지사 부산울산지사 경남지사 대구경북지사 광주전남지사 전북지사 대전충남지사 충북지사 제주지사 02-820-2300 032-888-6162~3 033-920-1547 051-644-1401~4 055-274-8300 053-741-5221~3 062-940-7006 063-211-6178~9 042-488-8542~3 043-273-4556 064-746-9472	- 신청 양식은 KATI에서 확인 가능

II 러시아 인증 정보

- ✓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KTR)¹⁾를 통해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
- ✓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러시아 해외인증 담당자
 - 회루자 대리
 - 전화 : 02-2164-0042

1. 일반 사항

항목	적용 규정/규격	CU 인증서 유효기간
딸기, 단감	식품 안전성 (TP TC 021/2011 DOC (품질선언))	단발성 or 1년 or 3년 (선택 가능함)

2. CU DoC 등록 절차 및 일정

절차	진행항목	담당	일정	비고
1	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	KTR	1일	- 일정은 시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- 서류는 1키로그램 씩 시험기관으로 발송해야함
2	신청서류 및 시료 발송	KTR	1주	
3	서류심사 및 시험	CU 인증기관	1주	
4	최종 서류심사와 DOC 등록	시험기관	1일	
총 소요 기간			약 2~3주	

1) <http://www.ktr.or.kr/>

3. 비용 세부사항

내용		시험비용	서류심사와 DOC등록 비용	합계	비고
1	CU DOC - 로트형	25 만원	35 만원	60 만원	- VAT 별도
2	CU DOC - 1년~3년	25 만원	60 만원	85 만원	

- 시료발송비용은 크기 및 수량에 따라 상이하며, 진행시 별도 청구
- 세관통관비용은 별도 청구 될 수 있음
- 각종 제출서류 및 진행에 따른 번역비용이 별도 청구될 수 있음

4. 필요사항

	준비서류
1	신청서, 계약서
2	식품검사합격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 - 러시아어
3	제품 라벨 - 러시아어
4	사후관리 프로그램 - 1년 or 3년 DoC 신청 경우 (KTR에서 러시아어 작성 도와줌)
5	러시아 대리인(관세동맹 내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, 협의가 되면 바이어도 될 수 있음)과 계약서
6	러시아 대리인 정보 (Taxpayer's identification number (세부납금자 확인 번호); principal state registration number (주요국가등록번호); All-Russian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)
7	국제와 국내 발행된 적합성 인증서와 시험성적서
8	인보이스, 계약서(수출/구매 계약서) 및 선적서류 (shipping documents) - 제품의 로트 또는 1-2개의 수량 대상으로 인증 진행 경우